

Incoterms 2000 義務에 관한 序文上的 問題點과 改正方案

吳世昌*

-
- I. 序論
 - II. 改正動機와 特徵
 - III. 義務에 관한 問題點과 改正方案
 - IV. 結論
-

I. 序論

안전성과 합리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생각해낸 개인과 기업의 합리적인 거래방법을 거래관습 또는 거래관행(usage of trade, practice)이라 하고, 이러한 거래관행이 동종 거래에 종사하는 상인에 의해 채용되어 반복 사용하는 전통적인 거래양식을 상관습(mercantile custom trade, usage commercial)이라 부르며, 이러한 상관습은 상법에서 말하는 상행위인 광의의 상관습과 협의의 매매관습으로 분류된다.

매매관습은 지역별 상관습(local custom)과 업종별 상관습 그리고 정형거래조항(trade terms)로 나누어지며, 어떤 의미에선 지역별 상관습과 업종별 상관습을 정형화 한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말하는 상관습은 주로 협의의 상관습인 매매관습을 의미한다.

상관습에 법률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것, 즉 지역별·업종별 상관습의 국제적인 통일, 다시 말해서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인 통일을 상관습(법)(law Merchant,

* 계명대학교 통상학부 教授.

legal custom of merchants)이라 부르며, 반드시는 아니나 상관습법의 토대 위에 통일매매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국제통일관습(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Incoterms와 UCP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제상업회의소가 기존의 국제무역관행의 연구를 통해 Incoterms를 1936년에 첫 발표한 이래 6차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Incoterms 200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는 다양한 정형국제거래계약조건의 국제적인 통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들간의 계약이행상의 의무관계가 통일화·표준화·단순화·안전화 되므로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두고 오해로 인한 분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인 낭비 등을 제거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13개로 구성되어 있는 Incoterms 2000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운송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통불능운송서류의 활용증가 그리고 다양한 운송기법의 변화에 근거하여 개정된 Incoterms1990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 국제무역관행의 반영은 물론이고 급후 상당한 기간을 대비한 개정이었음에 불구하고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가 없었고, 다룰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기존의 Incoterms 보다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거나, 기존의 Incoterms에 근거하여 변형을 불가피하게 모색하여 사용하게 된다.

Incoterms 2000은 이에 대비하여 변형이 일부 가능한 일부조건들 즉, EXW, CIF, CIP, DEQ, DDU, DDP, FAS의 경우 변형의 범위는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Incoterms 2000은 향후 10년간 국제무역에 적용된 국제통일 상관습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Incoterms 2000 해석의 중요한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22개항에 걸친 서문을 크게 두분야 즉, 규정표현 및 내용에 관한 설명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의무에 관한 서문상의 문제점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므로 업계와 학계에 Incoterms 2000의 이해에 도움과 금후 Incoterms 2000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 1 장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 Incoterms 2000의 개정동기 및 특징을 개괄하고, 제 3 장에서 의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제 4 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본인의 지금까지의 Incoterms에 대한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II. 改正動機와 特徵

1. 改正動機

최대공약적 상관행(the greatest common measure of practice, the most commercial practice)¹⁾ 혹은 널리 보급되는 국제무역관행(prevaling international trade practice)²⁾이며, 사실과 사실의 인정³⁾의 양면적 성격을 지니는 국제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자율규제인(international business self-regulation)인 Incoterms는 협의로는 가격조건이나 광의로는 계약조건이다.

그러나 명칭에 관계없이 Incoterms는 인도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건별 인도조건과 이와 관련한 주요한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⁴⁾

Incoterms는 개정시마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란 관행을 반영하고자 하나, 너무 다양하여 공동해석을 부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

1) Refer to introduction paragraph 11.

2) Jimenez, G., *ICC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ICC Publishing, ICC, 1977, p.74.

3) Schmittoff Clive M, *International Trade Usage*, Institute of Business Law & Practice, 1987, p.52.

4) Schmittoff, Clive M, *op.cit*, p.38.

서 다양한 각국의 무역관행이 분명히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관행을 반드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규적으로 개정되거나 수정이 되고 있다.⁵⁾

이번 Incotemrs 2000의 개정, 엄격히 말하면 수정된 동기는 당대의 상관행에 Incoterms를 조화시킨 목적에서이다. 예컨대 1980년 개정시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른 지금의 FCA의 등장은 전통적인 선측난간 통과를 물품의 인도내지 수령지점으로 하는 FOB대신 당시의 흔한 운송방식관행에 대한 Incoterms의 조화라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개정시 물품인도의 증거인 전통적인 종이서류를 대체하는 EDI사용증대 무역관행에 따른 Incoterms의 조화라 볼 수 있다.

이번 Incotemrs 2000 역시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관세무역지대의 확대,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운송관행의 변화라는 무역관행에 Incoterms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2. 特徵

상기 개정동기에 근거하여 약 2년에 걸친 개정 과정을 통해 발표된 Incotemrs 2000000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統一商慣習으로서 전통 보다 편리우선의 지향

수출입 허가 내지 통관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EXW와 FAS는 수입자가, DEQ·DDP는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을 취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입 허가 내지 통관절차를 쉽게 그러면서 편리하게 취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EXW와 DDP를 제외한 FAS는 수출자가 DES와 DEQ는 수입자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운송관행의 변화에도 적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Incoterms의 양극인 EXW와 DDP를 제외한 것은 당사자들의 Incoterms의 선정은 그 기준이 되는 재정상태, 운송, 보험, 무역업무 등의 사정이나 관련 및 숙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 경우 양조건은 이러한 선정기준의 최소와

5) Houtte Hans V, *The Law of Int'l Trade Law*, Sweet & Maxwell, 1995, p.150.

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조건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Incoterms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統一商慣習으로서의 단순화 지향

CISG등과 같이 다국적 표준⁶⁾인 Incoterms1990 의 경우 FCA의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른 화려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A 4 상의 7 가지 인도방법에 따른 위험과 비용⁷⁾ 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계속 되므로 본 조건의 사용상의 어려움과 이의해소를 위한 변형과 이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A 4 상의 규정을 단순화하여 인도지점으로 합의한 지점이 매도인의 거소인 경우 매수인이 지정 또는 자신이 선정한 운송수단에 적재상태를 인도로 하고, 인도지점으로 합의한 지점이 매도인의 거소 외의 장소의 경우 물품의 합의한 지점에 물품의 도착, 그러면서 양화 되지 아니한 인도로 하므로 종전의 경우 인도방법과 이와 관련한 비용과 위험의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지금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ncotemrs 2000은 統一商慣習으로서의 단순화를 지향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떤 의미에선 운송관행의 변화의 반영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3) 統一商慣習으로서 전자통신 적극 수용 지향

이미 Incoterms1990에서 EDI의 사용을 인정해 오던 차 이번 개정에서는 제 3 자에 의해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의 활용을 위해 소위 BOLERO, CMIA,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수용하고 있는바, 현재 국제 무역관행이 되고 있는 EDI 시대에 Incoterms의 적용을 대비하고 있다.

(4) 統一商慣習으로서 기존 국제무역거래법과 보조지향

UNCITRAL, Hamburg Rule, CMIRETRGT, CMIREBL 등에 의하면 규정과

6) Schmittoff, Clive M, *op.cit*, p.49.

7) 예컨대 THC의 구성요소가 26 개나 된다(Charles D, *Incoterms in Practice*, ICC Publishing S.A, 1995, pp.128~129).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여 용어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있는바, Incotemrs 2000 역시 새로운 시도로 동규정 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완벽하지는 아니하지만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 금후에 Incoterms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공되어 있는 국제무역관계 법들과 규정 체제상에 보도를 맞추려는 ICC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5) 統一商慣習으로서 세계적 적용 지향

EU 간의 무역이나 기타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와 같이 관세를 지급할 의미가 더 이상 없고 수출입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물품의 세관 통관을 취급하고 있는 Incoterms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일부지역에서 생각해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 Incoterms A 2·B 2·A 6·B 6를 통해 '적용이 되는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표현의 삽입과 이런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관세, 제세, 기타비용의 이들 지역에 부적합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히 C-terms 의 경우 A 6와 B 6를 통해 '이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인 경우'(if they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와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unless included within the cost of carriage)라는 표현의 삽입을 '적용되는 경우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관련 Incoterms의 사용에 모호함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통일상 관습으로서 세계적 적용을 더욱 공고히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統一商慣習으로서 성실계약이행 지향

Incoterms는 매매계약 가운데 이행의 성실이행을 강조하기 위해 이행의 핵심인 인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능·비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 가지로 규정하여 성실이행을 지향하고 있다.

(7) 統一商慣習으로서 계약이행에 있어 매도인 중심지향

Incoterms는 매도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수인의 의무

를 규정하므로 매도인의 계약이행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Ⅲ. 義務에 관한 問題點과 改定方案

1. 問題點

(1)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한 문제

① 관례적인 방법의 적용범위

서문 7 매도인의 의무 둘째 절에 의하면 FAS 와 FOB A.4상의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⁸⁾라는 무역관습에 관한 언급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때의 관례적인 방법의 적용범위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Incoterms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② 인도와 비용·위험 부담 한계의 불투명

Incoterms가 물품의 인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인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위험·기능·비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10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문 7상의 둘째절의 경우 인도에 따른 위험·비용·기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FAS와 FOB 상의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 삽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는바, 무엇 때문에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의 삽입이 필요한지가 불분명하다.

8) Incoterms1990의 경우 DDU, DES, DDP, DEQ, CPT, CIP 상에 A.3 a)와 관련하여 'in a customary manner'를, FCA의 경우 A.4와 관련하여 'customary'를, FAS와 FOB의 경우 A.4와 관련하여 'in the manner customary'를 표시했으나, Incoterms 2000에서는 A.3 a)와 관련하여 CPT, CIP 그리고 A.4와 관련하여 FAS와 FOB가 종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관례라는 의미를 가능한 한 줄이고 본문상에 상세하게 규정하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사소한바 a와 the가 규정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바, 통일 내지 차이점의 설명이 필요하다.

(2)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전의무와 관련한 문제

① 서문과 각 규정간의 통일성 결여

서문 8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전에 의하면, Incoterms A.5, 6 B. 5, 6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이러한 설명에 따른 Incoterms의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통일시키지 못한점이 있다.

② 규정간의 통일성 결여

특히, F-terms의 경우 비용과 위험의 이전시기와 관련한 규정상의 표현의 통일성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FOB의 경우 B.6 상의 이행전비용이전 원칙 가운데 'A.7에 따라 적절한 통지'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B.5 상에는 'A.7에 따라 통지'로 되어있는점, 그리고 FCA 등의 경우 B.5, 6 상의 위험이전원칙 가운데 이행전이전원칙은 같은 내용인데 B.5 상의 2개의 because 부분과 B.6 상의 2개의 because 부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점, 그리고 B.5에는 '...적기 도착 해태...'의 경우 fails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지에 관한 B.5에는 fails를 사용하고, B.6에서는 have failed를 사용하고 있는 점, 동일상황인데 B.5의 조기 위험이전원칙에는 either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데 B.6의 조기 비용이전 원칙에는 either를 사용하고 있는 점등이다.

(3) 부보의무과 관련한 서문조건 내용상의 문제

① CIF와 CIP상의 최저부보의무요건 사유의 미비

CIF와 CIP조건하의 보험부보책임 한도를 ICC 등의 최저부보를 규정한 이유의 설명으로 두 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즉, "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정확한 부보조건을 모른다. ② 운송중에 매각의 경우 후속매수인이 어떤 부보조건을 원할지 모른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CIF와 CIP와의 매도인의 최저부보 한도에 대한 사유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①의 사유의 경우 사전합의나 물품의 성격을 통해 양 당사자들이 알 수 있기에 그리고 ②의 사유의 경우 매도인은 후속 매수인을 상대로 거래

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 매수인의 선택권과 관련한 문제

① 매수인의 선택권과 관련하는 규정의 모순

서문 13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권은 A.3. 4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B.7과 관련이 있는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가? 모두 관련이 있다면 왜 장소만 선택권을 인정하고 정확한 인도시기의 선택권을 왜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정확한 인도시기도 매수인의 선택권이 될 수 있다면 권리선택에 따른 해태의 경우 매도인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권리건 의무건 통지가 필요하므로 통지의무를 두고 이의 위반인 경우 B.5. 6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부담이 되는데 왜 본문상에는 지정한 의무를 가진 경우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B.5, 7에 따라 위험·비용책임이라 하는가? 그렇다면해도 B.7이 아니고 B.6가 아닌가? 왜 F-terms의 경우 통지내용을 의무로 하고 기타 조건들은 권리로 하고 있는가?

② 매매당사자들간의 선택권 구분의 미비

예컨대 EXW, FCA A.4 와 D-terms A.3 상의 매도인의 선택과 B.7 상의 매수인의 선택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세관통관 의무와 관련한 문제

① 'where applicable'의 해석한계

서문 14 세관통관에 관한 규정 가운데 'where applicable'의 경우 세관절차와 이와 관련한 비용을 규정한 Incoterms 규정의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 Incoterms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를 A.2 .B.2와 관련하여 세관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와 필요 있는 경우 공히 적용을 위한 의미와 A.6, B.6와 관련하여 세관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와 이들의 지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히 적용을 위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할 수 없는가?

(6) 물품의 검사의무와 관련한 문제

① 사전검사 통지가 필요한 경우와 통지 책임한계의 미비

서문 16 물품검사의 내용으로 보아 인도전 물품을 사전 검사하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며, 어떤 경우에 사전검사를 통지해야 하는지가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 검사와 관련한 책임한계의 규정의 미비

Incoterms B.9 상에 규정의 수정이 제기되는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필요한 사전검사라면 다른 규정과 같이 매수인의 요청,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사전 검사를 매도인에게 요청하고 매도인은 협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면 다른 규정과 조화될 수 있지 아니한가?

2. 改正方案

이상의 서문 7, 8, 9, 13, 14, 16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절대 최소한의 원칙고수와 분명한 의무규정 구분의 필요성

서문 7과 관련하여 인도의 방법과 관련한 FAS 와 FOB A.4상의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의 경우 절대 최소한의 관례적용에 국한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Incoterms의 최대공약수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어찌면 Incoterms의 또 하나의 딜레마 즉,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신규거래나 중개인을 통한 상공매매의 경우 해결되지 아니하는 비용·위험과 관련한 인도방법의 문제가 다를 경우 관계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Incoterms 의 최대 공약수적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능·위험·비용 전반에 관한 설명구분과 위험·비용에 관련이 있는 인도방법에 관한 불가피성은 연계성은 있으나 분명

한 구분의 필요성이 있기에 서문 7의 둘째 절 가운데 but 다음에는 '특히 인도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의 인도 방법에 관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2) 비용·위험이전원칙의 규정상의 명시와 규정간의 통일의 필요성

서문 8의 간략한 이전원칙에 따라 Incoterms A.B. 5, 6 에 의하면 위험과 비용 이전의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위험과 비용이전 원칙의 소재목을 붙여주면 더욱 이해하기가 용이 할 수 있다. 예컨대, 이행과 관련한 3대 원칙인 이전의 대원칙, 사전(조기, 예외)이전원칙, 대전제원칙이 있고, 이행에 따른 당연부담원칙과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원칙이 있는바, 이들의 원칙에 대한 규정상의 소재목 삽입이 다른 규정과 조화상의 문제가 있다면 차선으로 해당 서문 규정상이라도 언급하면 위험과 비용이전에 관한 이해가 한결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A.7에 따라 통지'의 경우 충분한 통지를 의미하나 'A.7에 따라 적절한 통지'의 경우 이 '적절한 통지'란 앞의 문장과 연관시켜 볼 때 '충분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도 'A.7에 따라 통지'로 통일시키기가 바람직한데, 이렇게 'A.7에 따라 적절한 통지'로 표현한 것은 서문 6 용어의 정의 전문상의 동일한 의미의 상이한 표현사용제거라는 목적과 배치된다. 따라서 B.5에서와 같이 B.6에서도 통일시키기 위해 'appropriate'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적기 도착은 현재 완료형 보다 현재형이 더 유연성이 있기에, 그러나 통지 해태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하기 위해 통지가 완료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완료형을 사용하였을지 모르나 현재완료형의 표현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B.7에 따른 통지자체가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형으로도 무난하다. B.5상의 either의 삽입과 B.5와 B.6상 조기위험·비용 이전사유의 규정 역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3) 최대 공약수 특징 사유 제시의 필요성

최저부보조건을 택한 정작 올바른 사유는현재의 상관습(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⁹⁾을 반영하고 있는 Incoterms 규정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

의 최저의무¹⁰⁾ 만을 규정하는 규정이므로 보험부보만 예외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ICC의 3가지 부보조건 가운데 최저의무를 택하였음을 강조해야 한다.

(4) 선택권에 관한 서문 규정수정 및 선택권간의 구분의 필요성

매수인의 선택권은 A.3·4(예, EXW, FCA의 경우 A.4, D-terms의 경우 A.3)와 B.7과 모두 관련이 있다. B.7에 보면 원칙적으로 F-terms는 통지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나머지 조건들은 통지내용을 권리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자체를 합의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혹은 권리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의한 권리에 따라 정확한 인도장소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에게 선택권을 인정하여 매도인은 최적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정확한 인도시기도 선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상응하는 서문 13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정확한 인도시기가 매수인의 선택권 사항이 되는 경우 해태에 따른 매도인의 선택기준은 Incoterms1990 A.4에 나와 있는 'at usual time for delivery of such goods'가 기준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이 서문에서의 인정과 A.4상에 구체적 삽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무인 경우 위반은 B.5. 6에 따라 위험과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권리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기간과 장소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문상에선 지정한 의무를 가진 경우 위반의 경우에만 B.5. B.7에 따라 위험·비용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문상에 B.5, B.7으로 표시된 것은 B.5와 B.6로 정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B.6에서의 'B.7에 따른 적절한 통지'란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F-terms는 통지내용을 의무로 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권리로 하고 있는 이유는 매도인이 인도를 하기 위해선 운송수단이 필요한 바, 이러한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운송계약 체결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래조건의 특성상 그렇게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 수 있으나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선택권의 차이는 매도인의 선택권은 매수인의 선택권(권리 또는 의무) 가운데 권리로 선택한 경우의 해태에 기인하여 주어지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바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다.

9)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1999 p.17.

10) Charles, D. *op. cit.*, p.85.

(5) 'where applicable'의 확대 해석의 필요성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확대 해석과 A.6, B.6상에 내용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necessary...', 'where necessary' 등의 표현이 필요 없다. 따라서 표현의 단순화와 'necessary'와 'where necessary' 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에 따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개정시 이러한 확대 해석을 포함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6) 사전검사 통지와 관련책임한계 명시 필요성

매수인의 사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 상에 필요성, 통지,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서문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오해 즉, 문제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 서문 내용 자체를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상에 시기, 통지, 방법, 비용 등에 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로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관련한 책임한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A.9의 규정에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에 필요할 수 있는 사전검사와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매수인의 B.9 규정상에는 “A.9에 명시된 사전검사와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 통신문을 취득하는데 지급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로 수정 할 필요성이 있다.

IV. 結 論

이상에서 제 1 장 서론에 이어 Incotemrs 2000의 개정동기와 특징을 제 2 장에서, Incotemrs 2000 서문상의 의무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cotemrs 2000의 서문은 13 개로 구성된 Incoterms의 해석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Incoterms의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이미 Incotemrs 2000 서문상의 규정표현·내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본인의 논문에서 지적한 내용과 본 논문에서 지적된 의무와 관련한 서문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해 제시

된 내용들은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나 이러한 내용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Incoterms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꼭 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에 기여는 물론이고 업계의 대외무역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Jimenez, G, *ICC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ICC Publishing, 1977.
Schmittoff Clive M, *International Trade Usage*, Institute of Business Law & Practice, 1987.
Charles D, *Incoterms in Practice*, ICC publishing S.A. 1995.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Houtte Hans V, *The Law of Int'l Trade Law*, Sweet & Maxwell, 1995.
Incoterms 2000
Smittoff C.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5.
Houtte H.V,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Ramberg J.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